



2018학년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안내(“가”군)



2017. 7.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http://law.snu.ac.kr>

<http://admission.snu.ac.kr>

입 학 전 형 일 정 표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입학지원서 접수 (인터넷)	2017. 10. 10.(화) 09:00 ~ 10. 13.(금) 18:00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 (http://admission.snu.ac.kr)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law.snu.ac.kr)	
구비서류 제출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2017. 10. 10.(화) ~ 10. 16.(월) (평일 10:00 ~ 17:00)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15동 206호 교무행정실)	2017.10.13.자 우체국소인까지 유효함
특별전형 면접 대상자 발표	2017. 11. 3.(금) 18:00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law.snu.ac.kr)	개별통지 없음
특별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2017. 11. 6.(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합격자 발표 및 일반전형 정성평가 대상자 발표	2017. 11. 10.(금) 18:00 이후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 (http://admission.snu.ac.kr)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law.snu.ac.kr)	개별통지 없음
일반전형 면접 대상자 발표	2017. 11. 16.(목) 18:00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law.snu.ac.kr)	개별통지 없음
일반전형 면접 및 구술고사	2017. 11. 18.(토)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합격자 발표	2017. 12. 5.(화) 18:00 이후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 (http://admission.snu.ac.kr)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law.snu.ac.kr)	개별통지 없음
합격자 등록	2018. 1. 2.(화) ~ 1. 3.(수)		
1차 추가합격자 발표(결원 시)	2018. 1. 5.(금)		
1차 추가합격자 등록	2018. 1. 8.(월) ~ 1. 9.(화)		
2차 추가합격자 발표(결원 시)	2018. 1월 중		추후공고

※ 전형일정 및 세부사항은 학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차 례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1
2. 지원자격	1
가. 일반전형	1
나. 특별전형	2
3. 전형방법	5
가. 전형요소, 배점 및 선발방법	5
나. 전형절차	6
4. 입학지원서 접수	7
5. 제출서류	8
가. 공통서류	8
나. 특별전형 지원자 증빙서류	10
6. 동점자 처리기준	12
7. 합격자 발표 및 등록	12
8. 추가합격자 선발	12
9. 입학전형료 반환	13
10. 유의사항	13
11. 이의신청	14
12. 체크리스트	15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학위과정	모집단위	모집구분	모집인원	비고
석사	법학과	특별전형	9명 이상	총 입학정원(150명)의 6% 이상
		일반전형	141명 이내	총 입학정원에서 특별전형 합격자 수를 제외한 인원

※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의거, 모집인원은 2017학년도에 발생한 결원인원(총 입학정원의 10% 이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자격

가. 일반전형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18년 2월까지(3월에 졸업하는 대학 졸업자는 3월까지) 취득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2) 지원서 접수 마감일(2017.10.13.) 기준 1년 이내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의 적성시험(이하 “적성시험”이라 함)에 응시하여 성적을 제출하는 자
- 3) TEPS 또는 TOEFL 정기시험에서 아래의 성적을 취득한 자

구분	점수	비고	
TEPS	701점 이상	※ 지원서 접수 마감일(2017.10.13.)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하여, 구비서류 제출 마감일(2017.10.16.)까지 성적을 제출한 경우[단, TEPS는 제208회(2015.11.7.)~제238회(2017.9.17.) 정기시험]로서, 입학지원서에 기재한 성적만 유효함	
TOEFL	IBT		99점 이상
	PBT		597점 이상

※ 영어권 대학(원)에서 학사학위 이상(LL.M., MBA 등 포함)을 취득한 자는 TEPS 또는 TOEFL 성적 제출을 면제함

나. 특별전형 …… 1)의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2)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대상자

- 가) 장애인(1급~6급)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록)에 의해 장애인 등록(1급~6급)이 되어 있는 자
- 나)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서 국가보훈처에 등록되어 있는 자
- 다) 의상자 : 의상사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에 의해 의상자로 인정된 자
- 라)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또는 그의 가구원, 동법 제2조 제10호 및 동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3쪽의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의 가구원
- 마) 농·어촌지역출신자 :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읍·면) 지역 소재 중·고교(특수목적고, 자립형사립고 제외)에서 전(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세대에 속한 자
- 바)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세대에 속한 자
- 사)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자(또는 그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세대에 속한 자
- 아)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해 규정된 독립유공자의 자녀(또는 손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세대에 속한 자
- 자) 다문화가족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로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세대에 속한 자

※ 마) 농·어촌지역출신자, 바) 북한이탈주민, 사)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아)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자)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경제적으로 취약한 세대에 속한 자’란 다음 두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함

- 본인·배우자·부모 포함 가구원 전부의 최근 3년간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이 각 해당 연도별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의 3배 미만(‘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은 4쪽 참고)
- 본인·배우자·부모의 최근 3년간 재산세 총 납부액(과세특례분 포함)이 연간 30만원 이하

2) 지원요건

-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18년 2월까지(3월에 졸업하는 대학 졸업자는 3월까지) 취득예정자 포함]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나) 지원서 접수 마감일(2017.10.13.) 기준 1년 이내에 적성시험에 응시하여 성적을 제출하는 자
- 다) TEPS 또는 TOEFL 정기시험에서 성적을 취득한 자

구 분		점 수	비 고
TEPS		성적제한 없음	※ 지원서 접수 마감일(2017.10.13.)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하여, 구비서류 제출 마감일(2017.10.16.)까지 성적을 제출한 경우[단, TEPS는 제208회(2015.11.7.)~제238회(2017.9.17.) 정기시험]로서, 입학지원서에 기재한 성적만 유효함
TOEFL	IBT		
	PBT		

※ 영어권 대학(원)에서 학사학위 이상(LL.M., MBA 등 포함)을 취득한 자는 TEPS 또는 TOEFL 성적 제출을 면제함

※ 특별전형 라) 향: 차상위계층 인정기준 아래 1.~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자활급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중 하나 이상의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에 속한 자
2.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구 '우선돌봄 차상위가구')에 속한 자

※ 특별전형 마)~자) 항: 연도별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

▣ 2017년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A)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소득인정액(A×0.5)	826,465	1,407,225	1,820,457	2,233,690	2,646,923	3,060,155	3,473,388
보험료(A×0.5×0.03060)	25,290	43,061	55,706	68,351	80,996	93,641	106,286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26,465원씩 증가 (8인 가구 : 7,773,241원)

▣ 2016년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A)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소득인정액(A×0.5)	812,416	1,383,302	1,789,510	2,195,717	2,601,925	3,008,133	3,414,340
보험료(A×0.5×0.03060)	24,860	42,329	54,759	67,189	79,619	92,049	104,479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812,415원씩 증가 (8인 가구 : 7,641,095원)

※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시행에 따라 2016년부터 '최저생계비'에서 '기준 중위소득'으로 기준 변경

▣ 2015년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A)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소득인정액(A×1.2)	740,737	1,261,258	1,631,626	2,001,995	2,372,364	2,742,732	3,113,101
보험료(A×1.2×0.03035)	22,481	38,279	49,520	60,761	72,001	83,242	94,483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8,641원씩 증가 (8인 가구 : 2,902,892원)

▣ 2014년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액

(단위: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A)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소득인정액(A×1.2)	724,084	1,232,900	1,594,942	1,956,984	2,319,026	2,681,068	3,043,110
보험료(A×1.2×0.02995)	21,686	36,925	47,769	58,612	69,455	80,298	91,141

※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 (8인 가구 : 2,837,627원)

- 특별전형 지원자격에 대한 심사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실시
- 건강보험료 확인 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미포함

3. 전형방법

가. 전형요소, 배점 및 선발방법

1) 특별전형.....1단계 전형의 실질반영률은 괄호 안과 같음

서류평가 (1단계)		300점	면접 및 구술고사 (2단계)	총점 400점
적성시험	100점 (33.3%)		100점	
학업성적	100점 (33.3%)			
정성평가	100점 (33.3%)			

가) 서류평가는 적성시험, 학업성적, 정성평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 평가함

- 적성시험, 학업성적: 일반전형의 평가방식(각 100점 만점)과 동일함
- 정성평가는 수학능력과 장래성·다양성 두 부분으로 나누어 평가함
 - 수학능력(40점): 전공 및 과목의 난이도, 학년별 이수 추이, 재수강 과목 수 등 학업성적의 정성적 요소 고려
 - 장래성·다양성(60점): 자기소개서에 드러난 성장가능성과 잠재력, 가치관의 성숙성, 경험의 다양성, 특별전형 적합성(신체적 상황, 경제적 여건, 사회적 취약성 등 특별전형을 통한 선발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고려

※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은 대학 입학 이후 경력에 한해 평가에 반영함

나) 면접 및 구술고사는 법학수학능력 및 법률가로서의 적성과 자질 등을 평가하되, 법학지식은 평가하지 아니함

다) 특별전형에 의해 선발하는 입학생 중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기준을 충족하는 입학생의 비율을 특별전형 선발 예정 인원의 30% 이상으로 함

※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기준이라 함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구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2) 일반전형.....1단계 전형의 실질반영률은 괄호 안과 같음

정량평가 (1단계)		200점	정성평가 (2단계)	면접 및 구술고사 (3단계)	총점 300점
적성시험	100점 (50.0%)		50점	50점	
학업성적	100점 (50.0%)				

가) 정량평가는 적성시험, 학업성적 두 부분으로 나누어 평가함

- 적성시험: (언어이해영역 백분위 점수) × 0.4 + (추리논증영역 백분위 점수) × 0.6
 - ※ 논술영역 점수는 정성평가의 참고자료로만 활용됨(논술지문이 면접 및 구술고사 문제로 출제되는 것은 아님)
- 학업성적: 학사학위 수여대학의 성적표에 기재된 평점평균의 백점환산점수를 그대로 반영함
 - ※ 둘 이상의 학사과정을 졸업한 경우 지원자가 선택한 학사과정의 평점평균을 반영하되, 편입학한 경우에는 전적대학 성적을 이수학점 수에 따라 합산하여 산출한 평균점수를 반영함
 - ※ 공동학위제 등을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경우 상기 원칙에 준하여 평점평균을 산출함

나) 정성평가는 수학능력, 장래성·다양성 두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함

- 수학능력(20점): 전공 및 과목의 난이도, 학년별 이수 추이, 재수강 과목 수 등 학업성적의 정성적 요소 고려
- 장래성·다양성(30점): 자기소개서에 드러난 성장가능성과 잠재력, 가치관의 성숙성, 경험의 다양성 등을 고려
 - ※ 영어성적은 원칙적으로 지원기준으로만 활용되나, 예외적으로 영어성적이 우수한 지원자에 한해 정성평가(장래성·다양성 부문)에 반영하며, 지원자가 부가적으로 취득한 제2외국어(한자 포함) 능력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평가에 참고함
 - ※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은 대학 입학 이후 경력에 한해 평가에 반영함

다) 면접 및 구술고사는 법학수학능력 및 법률가로서의 적성과 자질 등을 평가하되, 법학지식은 평가하지 아니함

3) 공통사항

가) 우리 대학원 관련 규정 및 사정원칙에 따라 단계별 전형요소를 종합하여 평가함

나) 비법학사 선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동 시행령 및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은 비(非)법학사를 선발함

- ※ 지원자가 법학사를 포함하여 복수학위를 취득한 경우 온라인상 지원서 작성 시 법학사/비법학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은 이 선택에 따라 법학사 여부를 판단함. 비법학사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심의·결정함.

다)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선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동 시행령 및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 규정에 근거하여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은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를 선발함(‘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라 함은 서울대학교가 아닌 대학교의 학부로부터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의미함)

- ※ 서로 다른 학교 간의 일반편입 및 학사편입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졸업대학을 기준으로 함. 타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해당 여부 등이 문제되는 경우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가 관련 내용을 심의·결정함.

라) 지원자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전형절차

1) 특별전형

가) 서류평가 성적으로 특별전형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입학전형위원회가 정하는 인원을 면접 및 구술고사 대상자로 선발함

나) 서류평가 성적과 면접 및 구술고사 성적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함

다) 특별전형에서 불합격한 특별전형 지원자(예비합격자 포함)가 일반전형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영어성적 기준 등을 만족할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절차 없이 일반전형에 포함하여 심사를 진행함

2) 일반전형

- 가) 정량평가 성적으로 일반전형 모집인원의 2.5배수를 정성평가 대상자로 선발함
 - ※ 동점자 발생으로 인해 일반전형 모집인원의 2.5배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만큼 정성평가 대상자로 추가 선발할 수 있음
- 나) 정량평가 성적과 정성평가 성적을 합산한 성적이 높은 순으로 일반전형 모집인원의 1.5배수 이내의 범위에서 입학전형위원회가 정하는 인원을 면접 및 구술고사 대상자로 선발함
- 다) 정량평가 성적, 정성평가 성적, 면접 및 구술고사 성적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함

3) 2017학년도에 발생한 결원인원 보충(정원외 인원 선발)

- 가) 별도 전형을 진행하지 않고 2018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에 포함하여 선발함
- 나) 보충(선발) 인원은 총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함
- 다) 일반전형과 특별전형을 구별하여 결원을 충원함

4.

입학지원서 접수

가. 일 시 : 2017. 10. 10.(화) 9:00 ~ 10. 13.(금) 18:00

나. 전형료 : 150,000원

- ※ 인터넷 원서 접수 수수료는 본교가 부담함
- ※ 특별전형 지원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는 전형료(인터넷 원서 접수 수수료 포함)를 면제함
- ※ 특별전형(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자 제외) 지원자 중 1단계 전형 탈락 시 50,000원, 일반전형 지원자 중 1단계 전형 탈락 시 30,000원, 2단계 전형 탈락 시 20,000원을 원서 접수 시 기재한 전형료 환불 계좌로 환불

다. 접수방법 : 서울대학교 입학본부(<http://admission.snu.ac.kr>)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http://law.snu.ac.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라. 유의사항

- 1) 반드시 지원서 접수 마감일 2017.10.13.(금) 18:00까지 전형료를 결제해야 접수가 인정됨
- 2) 전형료 결제가 완료되면 지원서 수정은 불가능함
- 3) 지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은 아래의 '5. 제출서류' 항목과 같이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구비서류 제출기간 내 미제출한 자는 결격처리됨

5.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제출필수, △: 해당자에 한함, ×: 해당없음)

제출서류	일반전형	특별전형
1. 입학지원서 1부(인터넷 원서 접수 후 반드시 컬러로 출력할 것, 지원자 서명 필수)	○	○
2. 학사과정 전(준)학년 성적증명서 ¹⁾ 2부 및 졸업(예정)증명서 1부	○	○
* 편입학 경력이 있는 경우 모든 전적 대학의 성적증명서 ¹⁾ 2부 제출	△	△
* 외국에서 학사과정을 졸업한 경우 학점체계(성적평점환산기준 포함) 및 지원자의 학점 취득에 대한 설명서, 성적환산증명서 ²⁾ , 학력조회동의서 각 1부 제출 (최종 합격 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국외교육기관확인서/영사확인을 추가 제출해야 함) ³⁾	△	△
3.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 1부	○	○
4. TEPS 또는 TOEFL 성적증명서 1부(소정기간에 취득한 것에 한함)	○	○
5. 자기소개서 1부(인터넷 원서 접수 후 출력한 것에 한함) ⁴⁾	○	○
6. 대학원 졸업/재학 시 대학원과정 전(준)학년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	△
7. 기타 제출 가능 서류('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서류 목록'에 기재한 것에 한함) ⁵⁾ - 사회활동 및 경력 등 관련 증빙서류 - 영어 이외의 제2외국어능력시험 관련 증빙서류(취득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음)	△	△
8. 재학/졸업 중인 대학의 학적부 사본 1부(발급담당자 원본대조확인필) ⁶⁾	○	○
* 외국대학의 경우 학적부 대체확인서(징벌사항 확인) 1부 제출 ⁷⁾	△	△
9. 특별전형 지원자의 경우 특별전형 지원자격 증빙서류 * 아래 '나. 특별전형 지원자 증빙서류' 항 참조	×	○

- 1) 총 이수학점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 2) 외국대학 성적환산증명서 제출대상 및 발급/제출방법
 - 제출대상: 학부성적 부여 시 평점평균(GPA)으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영국 등 일부 외국대학의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지원자
 - 발급/제출방법: 아래의 학점 변환 서비스 제공 기관을 이용하여 백점환산점수 체계 또는 4.3만점 체계로 환산된 증명서를 구비서류 제출기간 내 제출

연번	기관명	증명서 종류	홈페이지
1	World Education Services (WES)	Course-by-Course (with GPA&course-levels)	http://www.wes.org/
2	Educational Credential Evaluators (ECE)	Course-by-Course	https://www.ece.org/
3	International Education Research Foundation (IERF)	Detail Report	http://www.ierf.org/

※ 증명서 발급·송부 시 소요되는 비용 및 기간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 3) **‘10.유의사항 - 나. 합격자 발표 이후에 관한 사항’** 항 참조
- 4) 자기소개서 기재금지사항에 관한 고지
 - 자기소개서에 본인 성명을 비롯하여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등 입학전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 됨.
 - 특히 부모·친인척의 직업에 관한 사항은 일체의 기재를 금지함.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어떠한 직업도 기재가 금지되며, 추상적으로 직종명을 기재하는 것(사업, 법조인, 공무원, 회사원 등) 역시 허용되지 아니함.
 - **기재가 금지된 사항을 기재했을 경우 평가과정에서의 실격, 합격 취소 또는 입학(허가) 취소될 수 있음.**
 - ※ 학적부 등 제출서류에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등 입학전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삭제하고 제출해야 함. 다만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는 예외로 함. 그 외 삭제 여부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전 문의하기 바람.
- 5)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서류 제출방법
 - 증빙서류 목록은 10개까지 기재 가능하나, 여러 개별 활동을 하나의 증빙서류 항목으로 통합하여 기재하는 것(예: 다양한 봉사활동 증명서를 ‘봉사활동 증명서’ 항목으로 통합하여 기재)은 금지함. ‘공통서류(7번 항목 제외)’는 증빙서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음.
 - 증빙서류 목록의 각 항목별로 5페이지(단면 출력 기준, 모아 찍기 금지)를 넘어서는 안 됨.
 - 증빙서류의 개수나 분량이 많을수록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님.
 - 서면형태가 아닌 증빙자료(예: 비디오테이프, CD 등)는 접수하지 않음.
 - 원본대조를 받고자 하는 경우 원본과 사본을 모두 지참 후 제출처에서 원본대조확인을 받아야 함.
 - 인적사항 및 본인 식별이 가능한 사진 혹은 기록에는 형광펜으로 표시해야 함. 그 외에는 어떠한 표기(색지, 메모 부착 등)도 하지 않아야 함.
 - 스테이플 사용을 금지함. 대신 클립, 집게 등을 활용하여 쉽게 분리될 수 있도록 제출해야 함.
- 6) 학적부는 대학본부 및 학과 사무실, 또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수령 가능하며, 수령 시 발급담당자에게 반드시 원본대조를 받아야 함. 다만 서울대학교 본부 학사과 및 주민센터에서 수령하였거나 (인터넷 발급 시) 원본대조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원본대조를 받지 않아도 됨.
- 7) 학적부 대체확인서는 교원이 아닌 행정 직원에게 작성 요청해야 함.

나. 특별전형 지원자 증빙서류

유형	지원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등	
신체적 배려 대상	장애인 (1급~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급~6급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1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자신의 신체적 또는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는 자기확인서(진술서) (양식자유, 1면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유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유공자 확인원(등급 및 담당자 연락처 기재) 1부 자신의 신체적 또는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는 자기확인서(진술서) (양식자유, 1면 이내) 	보훈처	
	의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상자 증명서(등급 및 담당자 연락처 기재) 1부 의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1부 자신의 신체적 또는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는 자기확인서(진술서) (양식자유, 1면 이내) 	보건복지부	
경제적 배려 대상	기초생활 수급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를 중심으로 발급)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자신의 신체적 또는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는 자기확인서(진술서) (양식자유, 1면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	
	차상위 계층	복지 급여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상위복지급여수급 확인서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를 중심으로 발급)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자신의 신체적 또는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는 자기확인서(진술서) (양식자유, 1면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확인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구 '우선돌봄 차상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상위계층 확인서(구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를 중심으로 발급)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자신의 신체적 또는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는 자기확인서(진술서) (양식자유, 1면 이내)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적 배려 대상	농·어촌지역 출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고교 교육과정 졸업증명서 및 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 경제적 여건 증빙서류(아래 참조) 	읍·면·동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담당자 연락처 기재) 1부 학력인정확인서(담당자 연락처 기재) 1부 경제적 여건 증빙서류(아래 참조) 	통일부/ 읍·면·동 주민센터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유공자확인원(담당자 연락처 기재) 1부 경제적 여건 증빙서류(아래 참조) 	보훈처 읍·면·동 주민센터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유공자확인원(담당자 연락처 기재) 1부 경제적 여건 증빙서류(아래 참조) 	보훈처 읍·면·동 주민센터	
	다문화가족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인관계증명서(부모) 1부 부모의 국적관련 증명서 또는 귀화증명서 1부 경제적 여건 증빙서류(아래 참조) 	읍·면·동 주민센터	
	경제적 여건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를 중심으로 발급)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읍·면·동 주민센터	

유형	지원자격	제출서류	발급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배우자·부모 포함 가구원 전부, 접수 마감일 기준 3년분(2014년 10월~2017년 9월)] 각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증 자격득실 확인서 1부 재산세(국세·지방세) 과세(납세)증명서[본인·배우자·부모 포함 가구원 전부, 마감일 기준 3년 실적] 각 1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역(본인·배우자·부모 포함 가구원 전부, 마감일 기준 3년 실적) 각 1부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사업) 소득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세무서), 부채증명서(금융기관) 중 해당 서류 1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지원자 및 보호자 중 근로소득 있는 자, 최근 3년) 자신의 신체적 또는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는 자기확인서(진술서)(양식자유, 1면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세무서/ 읍·면·동 주민센터 세무서/ 국세청 국세청

※ 특별전형 지원자 증명서류는 입학전형 공고일자 이후 발행된 것으로 제출(단, 차상위계층 증명서류는 원서 접수 시작일 기준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발급된 서류[2017.9.22.자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지방세납세증명서는 납부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납세증명서를 제출

※ 특별전형 지원자 자신이 특별전형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를 제출

다. 제출처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무행정실 (☎ 02-880-7539)

(08826 서울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5동 206호 교무행정실)

라. 제출기간 : 2017. 10. 10.(화) ~ 10. 16.(월), 평일 10:00 ~ 17:00

마.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2017.10.13.자 우체국소인까지 유효함)으로 제출

바. 유의사항

- 1) 제출서류는 위 제출서류 목록의 순서와 같이 정리한 후 체크리스트와 함께 제출해야 함
- 2) 모든 서류는 원칙적으로 입학전형 공고일자 이후와 같이 가장 최근에 발급받은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공통서류 중 '기타 제출 가능 서류'에 한하여 제출처에서 원본대조확인을 받아 사본을 제출할 수 있음
- 3)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공증된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함
- 4) 추천서는 접수하지 않음
- 5) 입학전형의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가 부담함
- 6) 자격인증은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하며,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6. 동점자 처리기준

가. 특별전형

- 1) 서류평가 총점이 상위인 자
- 2) 서류평가 중 정성평가 성적이 상위인 자
- 3) LEET성적이 상위인 자
- 4) 학부 학업성적이 상위인 자

나. 일반전형

- 1) 정량평가 성적과 정성평가 성적을 합산한 성적이 상위인 자
- 2) 정성평가 성적이 상위인 자
- 3) LEET성적이 상위인 자
- 4) 학부 학업성적이 상위인 자

7.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가. 일 시

- 특별전형 : 2017. 11. 10.(금) 18:00 이후
- 일반전형 : 2017. 12. 5.(화) 18:00 이후

나. 장 소 :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http://admission.snu.ac.kr>) 발표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입학>대학원공지사항>성명, 생년월일, 수험번호로 검색)

다. 합격증 교부 : 서울대학교 입학본부 홈페이지(<http://admission.snu.ac.kr>)에서 출력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입학>대학원공지사항>성명, 생년월일, 수험번호로 검색)

※ 지원결과에 대한 개별통지는 없으며, 합격증은 합격자 발표 기간에만 출력이 가능함

라. 합격자 등록 : 2018. 1. 2.(화) ~ 1. 3.(수)

※ 해당 기간 내에 미등록 시 합격이 취소됨

8. 추가합격자 선발

가. 예비합격자 선발

각 전형에서 성적이 높은 순으로 모집인원의 40% 이내의 인원을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순위는 공개하지 않음)

나. 추가합격자 선발 및 통지

미등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예비합격자 중 성적이 높은 순서에 따라 전화로 개별 통지(전화녹음)하여, 본인의 등록 의사를 확인한 후 추가합격자를 선발함
(예비합격자는 연락이 가능하도록 대기해야 하며, 연락이 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9. 입학전형료 반환

가. 입학전형료의 반환사유 및 금액은 다음과 같음(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3 제2항)

-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 과납한 금액
- 2) 대학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납부한 입학전형료 전액
-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 납부한 입학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나. 본인의 귀책이 아닌 위 1)~4)항의 반환사유에 해당되는 응시자는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본 전형의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기한 내에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의 신청 건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음

다. 원서 접수(인터넷 접수 포함) 시 유의사항 안내에 따른 지원자의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반환하지 않음

라. 입학전형료 반환신청서 : <별첨>

10. 유의사항

가. 원서 접수 및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

- 1) 온라인상 입학지원서 접수 시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함
- 2) 입학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는 접수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할 수 없음
- 3) 온라인상 입학지원서를 접수한 지원자는 지원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하며, 직접 방문 시에는 2017. 10. 16.(월) 17:00까지 서류가 접수장소(법학전문대학원 교무행정실 입시서류 접수창구)에 제출되어야 하고, 우편 송부 시에는 2017.10.13.자 우체국소인까지만 유효함
- 4) 지원 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입학 후 학사관리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나. 합격자 발표 이후에 관한 사항

- 1) 지원 당시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는 졸업증명서를 2018. 3. 2.(금)까지 법학전문대학원 교무행정실에 제출해야 함

- ※ 합격자 중 외국대학 졸업자는 학사졸업증명서에 대해 아포스티유 가입국인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서', 아포스티유 미가입국인 경우 '국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2018. 3. 2.(금)까지 제출해야 함(다만 2018년 3월에 졸업하는 대학 졸업자는 2018. 4. 2.(월)까지 제출해야 함)
- 국가별 아포스티유 관련 기관 정보는 www.hcch.net - Apostille Section 참고
 - 중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China Academic Degree & Graduate Education Development Center의 인증을 받은 증명서(영문)를 첨부해야 함(<http://www.cdgd.edu.cn> 참고)
 -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공증된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을 첨부해야 함

- 2) 합격자로서 2018년 2월까지(3월에 졸업하는 대학 졸업자는 3월까지) 신입생 입학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합격자 등록 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소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을 취소함
- 3) 입학 후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등록 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법학전문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단, 사법시험 및 기타 시험 준비, 직장 근무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음)

다. 일반적인 사항

- 1) 지원자는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http://law.snu.ac.kr>)의 공고 또는 게시사항 등을 확인해 제출서류 미비, 면접 및 구술고사 결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함
- 2) 본 법학전문대학원과 동일한 군(“가”군)에 속하는 타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수 지원하거나, 입학 지원서 및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금지사항 기재, 필수 제출서류 또는 기재사항의 고의적 누락, 서류의 위·변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여 합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을 취소하며 향후 본 법학전문대학원 및 서울대학교 입학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3)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필수요소(적성시험성적, 학업성적, 공인어학성적)를 위·변조한 자는, 당해 연도 적성시험성적이 무효가 되며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적성시험의 응시자격이 제한됨
- 4) 본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인원이 모집인원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도 단계별 선발 또는 최종 선발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5) 입학전형 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 6) 모집안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학칙 및 규정,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한 일반 원칙에 따라 결정·시행함
- 7) 그 이외의 세부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교무행정실(☎ 02-880-7539)로 문의하기 바람

11. | 이의신청

입학전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불복은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에 서면으로 제기해야 하며, 그 이후의 절차는 관련 법령, 학칙 및 규정에 따라 사정원칙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진행함

체 크 리 스투

(아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한 서류에는 O 표시, 해당없는 서류에는 - 표시)

지원자 인적사항

성 명 : _____ 수험 번호 : _____
 전형구분 : 일반전형 특별전형

제출서류	제출여부
1. 입학지원서 1부(인터넷 원서 접수 후 반드시 컬러로 출력할 것, 지원자 서명 필수)	
2. 학사과정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2부 및 졸업(예정)증명서 1부 * 편입학 경력이 있는 경우 모든 전적 대학의 성적증명서 2부 제출 * 외국에서 학사과정을 졸업한 경우 학점체계(성적평점환산기준 포함) 및 지원자의 학점 취득에 대한 설명서, 성적환산증명서, 학력조회동의서 각 1부 제출 (최종 합격 시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국외교육기관확인서/영사확인을 추가 제출해야 함)	
3.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 1부	
4. TEPS 또는 TOEFL 성적증명서 1부(소정기간에 취득한 것에 한함)	
5. 자기소개서 1부(인터넷 원서 접수 후 출력한 것에 한함)	
6. 대학원 졸업/재학 시 대학원과정 전(全)학년 성적증명서 및 졸업(예정)증명서 각 1부	
7. 기타 제출 가능 서류('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서류 목록'에 기재한 것에 한함) - 사회활동 및 경력 등 관련 증빙서류 - 영어 이외의 제2외국어능력시험 관련 증빙서류(취득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음)	
8. 재학/졸업 중인 대학의 학적부 사본 1부(발급담당자 원본대조확인필) * 외국대학의 경우 학적부 대체확인서(징벌사항 확인) 1부 제출	
9. 특별전형 지원자의 경우 특별전형 지원자격 증빙서류(아래 참조)	

유형선택	지원자격	특별전형 제출서류	제출여부
	장애인 (1급~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1급~6급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1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자신의 신체적 또는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는 자기확인서(진술서) (양식자유, 1면 이내) 	
	국가유공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유공자 확인원(등급 및 담당자 연락처 기재) 1부 자신의 신체적 또는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는 자기확인서(진술서) (양식자유, 1면 이내) 	
	의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상자 증명서(등급 및 담당자 연락처 기재) 1부 의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1부 자신의 신체적 또는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는 자기확인서(진술서) (양식자유, 1면 이내) 	
	기초생활 수급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를 중심으로 발급)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자신의 신체적 또는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는 자기확인서(진술서) (양식자유, 1면 이내) 	

유형선택	지원자격	특별전형 제출서류	제출여부
	차상위 계층 복지 급여 수급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상위복지급여수급 확인서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를 중심으로 발급)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자신의 신체적 또는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는 자기확인서(진술서)(양식자유, 1면 이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구 '우선돌봄 차상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상위계층 확인서(구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를 중심으로 발급)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자신의 신체적 또는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는 자기확인서(진술서)(양식자유, 1면 이내) 	
	농·어촌지역 출신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고교 교육과정 졸업증명서 및 학교생활기록부 각 1부 경제적 여건 증빙서류(아래 참조) 	
	북한이탈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담당자 연락처 기재) 1부 학력인정확인서(담당자 연락처 기재) 1부 경제적 여건 증빙서류(아래 참조)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유공자확인원(담당자 연락처 기재) 1부 경제적 여건 증빙서류(아래 참조) 	
	독립유공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유공자확인원(담당자 연락처 기재) 1부 경제적 여건 증빙서류(아래 참조) 	
	다문화가족의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인관계증명서(부모) 1부 부모의 국적관련 증명서 또는 귀화증명서 1부 경제적 여건 증빙서류(아래 참조) 	
	경제적 여건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족관계증명서(부 또는 모를 중심으로 발급)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본인·배우자·부모 포함 가구원 전부, 접수 마감일 기준 3년분(2014년 10월~2017년 9월)] 각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건강보험증 자격득실 확인서 1부 재산세(국세·지방세) 과세(납세)증명서[본인·배우자·부모 포함 가구원 전부, 마감일 기준 3년 실적] 각 1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내역(본인·배우자·부모 포함 가구원 전부, 마감일 기준 3년 실적) 각 1부 종합소득세 신고사실이 없고 근로(사업) 소득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세무서), 부채증명서(금융기관) 중 해당 서류 1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지원자 및 보호자 중 근로소득 있는 자, 최근 3년) 자신의 신체적 또는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는 자기확인서(진술서)(양식자유, 1면 이내) 	